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86

발의연월일: 2021. 3. 10.

발 의 자: 박영순·장철민·조승래

김민철・황운하・이규민

이상헌 • 남인순 • 문정복

박성준 · 강민정 · 조오섭

김승원 · 최종윤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바 있음.

이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등).

법률 제 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자"를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로, "날"을 "날 또는 취소된 날"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제66조를"을 "제66조의2제1항을"로, "대여"를 "양도 또는 대여"로 한다.

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물류관리사"를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로, "인증서·등록증·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수받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1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③
<u>자</u> 는 그 처분을 받은 <u>날</u> 부터 3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
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u>소된 자 날 또는</u>
	<u>취소된 날</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66조를</u> 위반하여 다른 사	2. 제66조의2제1항을
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	
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	
증을 <u>대여</u> 한 때	- <u>양도 또는 대여</u>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	<u>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u>
선업자·물류관리사 및 우수녹	<u>선업자</u>
색물류싴처기업은 다른 사람에	

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지정증 또는 <u>자격증</u>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 다.

<신 설>

제71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신 설>

	_
<u>인증서 · 등록증 또는 지정증</u> -	
	_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 여 금지 등) ①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 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수받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
 나, 그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
 여한 자

<u><신 설></u>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양수 또
	는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u>자</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